

---

# 교통건설국

---

## 대중교통과





# (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(성립전)) (P - 45)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4. ~ 5.
- 사업규모 : 일반택시기사 199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(법인 택시 운전기사)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	
계	223,000	241,800		102,500	139,300	18,800
국 비	223,000	241,800		102,500	139,300	18,800
도 비						
시 비						
기 타						

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결정으로 고용노동부(지역산업고용정책과) 사업 진행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지원요건을 충족한 운전기사 인원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정한 예산(국비 100%) 지원
- 1인당 70만원 일시지급
  - ※ 지원대상 :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가 '21.2.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('21.4.2일)에 계속 근무 중인 사람
  - ※ 김포시 요건 충족자 : 199명

## 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	302-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	·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: 700,000원 *199명	139,300	

**□ 사업 추진계획**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3. : 사업 업무매뉴얼 송부 [경기도 택시교통과-6255(2021.3.30.)호]
- 2021. 3. ~ 4. : 지원금 신청 공고·접수, 지급대상자 검토 및 결정통보
- 2021. 5. :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집행(대상자별 지급)

**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**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	
2020년	- 2020.10. 8. 지원사업 시행 공고 - 2020.10.14~27. 지원금 신청 접수 - 2020.10.29. 지급대상자 검토 결정 통지 - 2020.11.11.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대상자 지급(223명)	
202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</li> <li>- 2021. 1. 8. 지원사업 시행 공고</li> <li>- 2021. 1. 8~15. 지원금 신청 접수</li> <li>- 2021. 2. 1. 지급대상자 검토 결정 통지</li> <li>- 2021. 2.10.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대상자 지급(205명)</li> <li>●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</li> <li>- 2021. 4. 2. 지원사업 시행 공고</li> <li>- 2021. 4. 2~12. 지원금 신청 접수</li> <li>- 2021. 4. 23. 지급대상자 검토 결정 통지</li> <li>- 2021. 5. 14~18.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대상자 지급(199명)</li> </ul>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223,000 (국고보조금)	223,000	-	-	
2021년	241,800 (국고보조금)	241,800	/	-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**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대중교통과	택시화물팀장 이향원	담당자	행정7급 홍선영	전화	5552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(일반택시기사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) (P - 45)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8. ~
-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약 215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의 택시 기사간 차등지원에 따른 차액보전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	172,000			172,000	172,000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	172,000			172,000	172,000	
기 타							

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1년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규 지원사업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제4조 및 제5조 제8호
근거내용	제4조(생활안정 지원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코로나19의 발생·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5조(지원 대상) 시장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교육·보육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8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 재직 중인 택시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시 중기부 개인택시기사와 고용노동부 일반택시기사 간 차등지원에 따른 차액보전

구분	1차	2차	3차	비고
일반택시기사(고용노동부)	100만원	50만원	70만원	
개인택시기사(중기부)	100만원	100만원	100만원	

**□ 사업비 산출내역**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일반택시기사 생활·경영안정 지원금	302-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	· 일반택시기사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 : 172,000,000원 =	172,000	

**□ 사업 추진계획**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1. :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
- 2021. 3. ~ 4. : 지원사업 자료 제출
- 2021. 6. : 제4회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
- 2021. 8. : 지원공고 및 시행
- 2021. 9. : 결과보고 및 정산

**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대중교통과	택시화물팀장 이향원	담당자	행정7급 홍선영	전화	5552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# (전세버스기사 생활·경영안정지원금) (P - 45)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8. ~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600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	600,000			600,000	600,000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	600,000			600,000	600,000	
기 타							

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전세버스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필요
- 타 시·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사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김포시 소재 업체의 지속적 지원 요청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「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(안)	제4조 및 제5조
근거내용	<p><b>제4조(생활안정 지원)</b>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코로나19의 발생·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5조(지원 대상)</b> 시장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와 교육·보육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도 지원대상자로 본다.</p> <p>9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중 시 소재 주사무소·영업소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</p>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예시) 의결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유행상황 장기화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전세버스 업계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 안정 지원
- 사업장 주소지가 김포시에 소재해 있는 전세버스 업체(주사무소 및 영업소)의 운수종사자에 지원

**□ 사업비 산출내역**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전세버스기사 생활경영안정지원금	302-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○ 1,000,000(원)×600(명) =	600,000	

**□ 사업 추진계획**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8. : 김포시 홈페이지 사업 공고
- 공고일 ~ 8. 13. : 지원금 신청서 제출(법인→김포시)
- 2021. 8. 16. ~ 8. 20. : 신청자 근속요건 확인 및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
- 2021. 8. 23. ~ 8. 27. : 지원금 지급(김포시→개인별 계좌입금)
- 2021. 8. 限 : 지급완료 및 사업 정산

**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**

부서명	대중교통과	버스정책팀장 채재열	담당자	행정7급 김정아	전화	5916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---

# 교통건설국

---

## 안전총괄과





# 폭염취약계층(취약노인) 냉방물품 지원(성립전) (P - 46)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05. ~ 07.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폭염취약계층(취약노인) 냉방용품 구매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냉방용품 배부 등을 통한 폭염피해 최소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-	17,460	-	-	17,460	17,460	
국 비	-	-	-	-	-	-	
도 비	-	17,460	-	-	17,460	17,460	
시 비	-	-	-	-	-	-	
기 타	-	-	-	-	-	-	자부담

## 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자연재난과-10647(2021.4.29.)호에 따른 폭염취약계층(취약노인) 냉방물품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

## 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연재해대책법	제3조 제2항(책무)
근거내용	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	

## 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## 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 폭염취약계층(취약노인)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방용품 지원 필요(도비100%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고
합계			17,460	
폭염취약계층 (취약노인) 냉방물품 지원	201-01 사무관리비	· 쿨매트 : 30,000원*460개 = · 쿨베개 : 30,000원*122개 =	13,800 3,66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3. : 폭염취약계층(취약노인) 냉방물품 수요조사
- 2021.06. : 폭염취약계층(취약노인) 냉방물품(쿨베개, 쿨매트) 지원
- 2021.07. : 폭염취약계층 추가 수요조사 진행 및 물품 지원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 해당없음	
2020년	- 해당없음	
2021년	- 쿨매트(460개), 쿨베개(122개) 제작 15,697천원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-	-	-	-	
2021년	17,460	15,697		1,763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자연재난팀장 최영문	담당자	방재안전8급 이그린	전화	2916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